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327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관련법령 : (공통)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메트로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도시철도공사 :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화장실 확충

-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
- 지하철 공기질 개선, 친환경 LED조명 교체
- 테마역사 조성
- 기타 지하철 안전관련 사업 등

다.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양 지하철 공사예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시설 노후화 및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고('16. 5월) 이후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이영희 (☎2133-2248)